

서울시보

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seoul.go.kr

제3604호

2020.8.28.(금)



목 차**◆ 고 시**

제2020-359호 서울시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 전역 집회 제한 연장 고시 2

◆ 구 공 고

제2020-1334호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열람공고(서초구) 3

◆ 정 정

제2020-362호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정정고시 4

고 시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359호

서울시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 전역 집회 제한 연장 고시
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전지역에서의 집회를 제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8월 28일
서울특별시장

□ 집회금지 개요

가. 금지대상 : 서울특별시 전지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의 집회

※ 집회는 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옥외집회 및 시위를 말함

나. 금지기간(연장) : 2020년 8월 21일 00시부터 9월 13일 24시까지

- 당초(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-353호) 금지기간 : 2020년 8월 21일 00시부터 8월 30일 24시까지

다. 위반시 처벌 : 위반한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 대상 300만원 이하의 벌금
(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0조제7호)

라.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전 통지를 생략합니다.

구 공 고

◆ 서초구 공고 제2020-1334호

현인마을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열람공고

「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」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『현인마을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초안』에 대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8월 28일

서 초 구 청 장

1. 사업개요

- 가. 사업명 : 현인마을 도시개발사업
- 나. 위 치 :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347번지 일대
- 다. 사업시행자 : 현인마을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
- 라. 사업면적 : 132,379.7㎡
- 마. 건축계획 : 전체연면적 120,494.71㎡(지하2층/지상3층, 261가구)
- 바. 건축물용도 :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, 근린생활시설

2. 열람기간 및 장소

- 가. 열람내용 : 현인마을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(초안)
- 나. 열람기간 : 2020.9.1.(화) ~ 2020.9.29.(화) (21일간, 토·일 및 공휴일 제외)
 - ※ 주민설명회 개최일정은 「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」 제6조에 따라 열람기간 내 사업자가 별도공고 예정
- 다. 열람장소 : 서초구청 6층 도시계획과(☎02-2155-6791), 내곡동 주민센터(☎02-2155-7951)
 - ※ 전자공람 : 서초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(<http://www.seocho.go.kr>)

3. 주민의견 제출

- 가. 제출기간 : 열람기간 만료시까지
- 나. 제출방법 : 열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제출 양식에 기재 후 서면제출 및 우편제출
(단, 우편접수 시 기한 내 발송분만 유효)
- 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도시계획과(☎02-2155-6791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정 정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362호

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정정고시

코로나19 확산 차단 및 예방 등 방역 강화를 위해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서울특별시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정정고시합니다.

2020년 8월 28일
서울특별시장

1. 처분당사자 :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
2. 처분내용
 - 실내*, 실외**에서 마스크 착용할 것.
 - ※ 단,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
 - * 실내 : 버스, 지하철, 선박, 항공기,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,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
 - ** 실외 : 집회,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
3. 처분근거
 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
 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의4호
4. 처분사유 : 수도권 내 코로나19 확진 사례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전국적인 확산 우려가 위협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상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통해 개인 방역을 강화하여 더 이상의 확산을 차단하고자 함
5. 처분기간(정정) : 2020. 8. 24.(월) ~ 별도 해제 시
 - 당초(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-355호) 처분기간 : 2020. 8. 24.(월) ~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해제 시
 - ※ 과태료 위반 사항의 경우 계도기간 : ~ 2020. 10. 12.
6. 처분의 효력 발생일 : 2020. 8. 24.(월) 0시 부터
7. 처분서의 교부요청 : 처분 당사자는 「행정절차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8.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9.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3조 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(단, 과태료의 경우 2020년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),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·조사·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.
10. 처분 담당자 :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장. 끝.

- 안전한 서울 • 따뜻한 서울
- 꿈꾸는 서울 • 숨쉬는 서울



기관의 장	
선	
람	

공 람									